

17·18世紀 釜山地方(東萊府)의 財政

鄭 貳 根

(동아대학교 강사)

目 次

- I. 序 論
- II. 東萊府의 租稅收取
- III. 東萊府의 京司上納斗 營納
- IV. 東萊府의 歲出入
- V. 結 論

I. 序論

移秧法의 보급을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성의 증대로 18세기를 전후로 하여 조선사회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은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소농민경영의 확립과 이에 따른 지주-소작관계의 확대 발전 및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나타나며, 또한 국가의 수취체계(국가의 수입 구조와 지배 수취기구)에 있어서도 대전환을 이루었던 것이다.

朝鮮前期 국가의 수취체제는 전통적인 租庸調체제를 따라 기본적으로 物納貢租와 勞役(勞動納)으로 대별된다. 물납공조에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田租와 家戶를 대상으로 하는 貢賦(공납)가 있고 勞役으로는 부역노동(搖役, 戶役, 力役, 稕賦)과 軍役·職役을 기간으로 하는 身役이 있다.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지주적 토지소유의 확대 등으로 변화된 조선후기에는 貢賦의 지세화(大同法의 실시), 身役의 물납화, 제반 수취의 토지에의 집중 및 조세의 금납화의 진전 등 수취체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리하여 조선후기 국가재정은 바로 地稅, 身役(身布·田·米), 還耗가 그 근간이 되었다.

조선조의 地方財政도 中央財政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취의 근간인 地稅, 身役, 還耗에 두고 있다. 그런데 각 지방관아에서 수취하는 제반 조세는 자신의 재정에 충당할 뿐만 아니라 일정부분을 중앙과 營鎮에 상납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東萊府의 조세수취와 歲出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土地와 人身에 대한 東萊府의 제반수취에 대해 살피고 제3장에서는 동래부의 수입 중 중앙과 營鎮에 대한 상납에 대해 살펴보고, 끝으로 東萊府衙의 歲出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¹⁾

1))조선후기 부산경제 및 東萊府의 財政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金玉根, 〈朝鮮後期의 釜山經濟〉(金玉根·慎奎晟 外, 《釜山經濟史》, 釜山商工會議所, 1989, pp.147-239) 가 있다.

동래부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사료인 邑誌는 18세기 중엽이후의 것이므로 본고는 18세기 중엽이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동래부의 재정분석 시기를 이렇게 설정한 것은 조선후기 조세수취체계에 큰 획을 이루는 대동법 실시가 동래부에서는 1679년부터 시행되며, 또한 군역세 추취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의미하는 균역법이 1750년에 시행되었으므로 18세기 초와 중기를 중심으로 조선후기의 수취체계가 대전환을 이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II. 東萊府의 租稅收取

1. 地 稅

朝鮮後期 王朝의 物的 기반인 地稅, 身役, 還耗 및 기타 諸稅의 수취가 동래부에서는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지세에 대해서 살펴보자.

조선전기에 地稅(土地에 대해 부과하는 稅)는 田稅 하나뿐이었으나, 조선후기에 들어와서는 貢納, 軍役稅 등이 토지로 이전되어 稅役이 토지에 집중되었다. 조선후기의 地稅(結稅 또는 結役이라고도 함)에는 田稅 이외에 三手米, 大同, 結米 등이 포함되었다.

(1) 조선후기 토지에 부과된 田稅는, 조선전기의 視年法이라고 부르는 定率稅制(世宗 貢法에서는 수확의 20분의 1)와는 달리 1結의 전세가 4말 또는 6말의 일정액으로 고정된 定額稅制인 永定法으로 변천하였다.

그러면 동래부의 토지상황과 전세수입을 邑誌를 통해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조선후기 永定法 아래 동래부의 전세의 크기를 시기적으로는 약간 뒤이지만 순조 32년(1832)에 편찬된 《東萊府邑誌》에 의하여

살펴보면, 논의 時起田(當年課稅地) 1,728結에 대해 전세과세액이 548섬 이므로 1결에 대한 평균세액이 4말 7되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표의 전세는 논과 밭에 부과하는 元稅이고 그 밖에 加升, 斤上, 戶曹作紙, 貢人役價, 倉役價, 人情 등 전세에 대한 여러 가지 명목의 부가세와 잡세가

〈표 1〉 東萊府의 土地狀況과 田稅收入

年度	區分	帳簿田畝	各種 雜頃田	出稅實結	課稅額
①1740	논	2,203결			쌀 826섬
	밭	1,033결			콩 183섬
②1759	논	2,223결	389결	1,834결	
	밭	1,075결	369결	716결	
	합계	3,298결		2,540결	
③1832	논	2,203결	474결	1,728결	쌀 548섬
	밭	1,033결		716결	콩 197섬
	합계	3,236결		2,444결	
④1868	논			㉡ 1,570결	쌀 506섬
	밭			㉡ 719결	콩 198섬
	합계	3,236결	1,044결	㉠ 2,192결	
				㉡ 2,289결	

자료 : ① 《東萊府誌》, 영조 16년(1746)

② 《東萊府邑誌》, 영조 35년(1759)

③ 《東萊府邑誌》, 순조 32년(1832)

④ 《東萊府事例》, 고종 5년(1868)

※ 단, ㉠은 量案(土地臺帳)상에 기록된 것이며, ㉡은 새로 開墾하였으나 아직 量案에 오르지 않은 田地이나 徵稅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다.

있는데, 동래부에 있어서는 이러한 잡비부담이 적었다. 왜냐하면 전세는 본래 호조에 상납하기로 되어있는 稅目이었으나, 호조에 상납하지 않고 현지에서 수납 저장하여 왜관경비에 충당하기 때문이었다.

동래부가全土地를 대상으로 수취하는 전세의 크기는 표에서 나타난 대로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시기가 흐를수록 時起田의 수량이 점차 감소해 가며 그에 따라 전세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후기 전국적 경향이었는데, 이러한 出稅實結(時起田)의 감소는 다름아닌 조선사회가 구조적으로 해체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²⁾

(2) 三手米는 선조 26년(1593)에 전시특별세로서 신설된 稅目이다. 임진란의 와중인 선조 26년에 三手兵(砲手, 射手, 殺手)을 양성하기 위하여 訓練都監을 설치하고,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평안과 함경 2도를 제외한 6도의 논밭 1결에 쌀 2말 2되를 부과하였는데,³⁾ 이를 三手米라고 불렀다. 그 후 인조 12년(1634)에 三南에 量田(토지조사)을 실시한 결과 田結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1결의 부과액을 1말 2되로 감액하였으며, 병자호란 이후 경기도에는 三手米를 면제하였다.

순조 31년(1831) 동래부의 出稅實結 약 2,444결에 대한 삼수미의 부과액은 쌀 195섬 8말이었고 고종 5년(1868)에는 183섬이었다. 삼수미는 元稅 이외에 補縮米로서 삼수미 1섬에 1말 7되를 거두었다. 동래부의 삼

2) 鄭貳根, 〈甲午農民戰爭의 社會經濟的 背景〉, 東亞大學校 大學院 經濟學科 博士學位論文, 1992. 참조.

3) 고래로 전세의 稅物은 밭에는 콩, 논에는 쌀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진란 이후 신설된 삼수미, 대동, 結作, 砲糧米 등 각종 地稅에는 이 원칙이 무너지고 밭에도 논과 같이 쌀로 거두었다.

수미는 전세와 함께 이를 호조에 상납하지 않고 본관에 저장해두었다가倭料에 사용하였다.

(3) 大同稅는 종래의 각종 토산물을 家戶에 부과하던 貢賦을 地稅로 전환하여 토지 1결에 쌀(또는 布, 錢) 12말을 수세하는 地稅의 한 세목이다. 大同法은 광해군 즉위년(1608)에 경기도에서 시작하여 100년을 걸쳐 도별로 확대·실시되어 숙종 34년(1708)에 황해도에 마지막으로 실시되었다. 동래부를 포함한 경상도에는 숙종 4년(1678)부터 시행키로 되었으나, 그 해에 경상도에 극심한 홍작이 들어 숙종 5년(1679)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논 밭 1결에 쌀 12말을 부과하는 대동법은 元帳簿田畝에 舊來陳荒地와 災害地 및 대동세를 면제하는 각종 免賦地(이를테면 官屯田, 宮房田, 各營衙門屯田, 陵園墓位田 등)를 제외한 나머지의 논·밭이다. 동래부의 대동세 부과액은 순조 31년(1831)에는 쌀 1,891섬이며 고종 5년(1868)에는 쌀 1,767섬이었다.

각도 주현에서 수세하는 대동세는 중앙상납미와 지방유치미로 나누어 지는데, 전자는 大同事를 관장하는 宣惠廳에 상납하여 貢納制 아래 貢物進上의 세목으로 징세하여 사용한 각종 수용품을 구입하는 경비(貢價)에 쓰는 것이고, 후자는 本官에 저장해 두었다가 營邑의 각종 수용품 및 기타 경비에 쓰는 것이다. 그런데 東萊府의 중앙상납미는 올산 및 기장현과 마찬가지로 중앙에 상납하지 않고 동래부에 儲置하여 두었다가 관내에 있는 왜관의 倭人첩대비와 동래관내에 있는 左水營需米條에 충당하였다.

(4) 結米는 英祖 26년(1750) 均役法 실시에 즈음하여 신설된 地稅의 일종이다. 均役法의 주된 내용은 종래에 연간 2필을 바치던 軍布(良布)를 1필로 반감하는 것이다. 군포를 1필로 반감하면 군포수입이 반감되게 되는데, 이것을 포충하기 위하여 평안, 함경 양도를 제외한 6도 전결에 매결당

쌀 2말(또는 5錢)을 징세하여 부족한 경비에 충당하였는데 이를 結米 또는 結錢이라고 하였다.

고종 4년(1867) 동래부의 結錢 수입은 1,239냥이었다. 동래부의 결전은 중앙(均役廳)에 상납하지 않고 경상도 수군에 대한 紿代糧錢條로 左水營관하의 营鎮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良布減疋에 따른 경비부족을 보진하는 紿代는 균역청에서 해당관아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각도 주현에서 수세하는 급대재원인 海稅 結米 軍官布 餘結稅를 균역청으로 상납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각도 영진을 비롯한 외방관아에 지급하는 급대비는 外劃이라 하여 현지에서 직접 지급하였다. 이 外劃제도에 따라 동래부의 結錢을 현지의 해당관아(水軍營鎮)에 직접 지급하였다.

(5) 임진란 이후 토지에는 기술한 대로 각종 지세의 元稅와 이에 대한 정규의 부가세와 잡비가 있다. 임진란 이후 17세기에 논 밭 1결에 쌀 12말을 부과하는 대동세를 신설할 때 종래에 토지와 家戶에 부과한 모든 과외 잡세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공약은 얼마후 空文化되고 말았다.

시기가 흐름에 따라 팽창하는 국가의 경비, 기강의 문란에 따른 낭비와 관리들의 중간횡령의 증대, 국가기구와 결탁한 지주들의 조세포탈 등으로 중앙 및 지방관부의 재정사정은 날로 악화되어 갔다. 이러한 재정의 궁핍화에 따라 18세기초부터는 토지와 家戶에 다시 과외잡세가 부과되기 시작하였으며 농민에 대한 수탈은 강화되어 갔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 1결에 대한 결세는 60말 안팎이었는데, 토지에 대한 정규세가 1결당 최고 쌀 23말이었고(《續大典》규정에 따른 結當 法定總額을 계산해 보면 結稅 元稅가 田稅 5말<4말~6말>, 三手米 2말 2되, 대동미 12말, 결미 2말로 합계가 21말 2되이고 法定附加稅가 대략 1말로 총합계가 22말 2되이다) 나머지 40말이 과외잡세인 것이다. 또한 당시는 지주-소작관계가 지배적인

농업경영방식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정규세는 지주가 부담하고 과외잡세는 소작농민이 부담하였던 것이다. 당시 이러한 조세의 수탈이 농민을 더욱 몰락시키게 되었다. 동래부의 사정도 이러했을 것이다.

이상에서 토지에 부과된 세목의 내용과 동래부의 사정에 대해서 대략 살펴보았다. 사료에 나타난 토지부과 稅目과 그 크기를 〈표 2〉로 정리해 두었다.

〈표 2〉 東萊府의 地稅種目과 収取額

年度		出稅實結	田 稅	三手米	大同米	結 錢
①1832	논	1,728결	쌀 548섬	195섬	1,891섬	?
	밭	716결	콩 197섬			
	합계	2,444결				
②1868	논	1,570결	쌀 506섬	183섬	1,767섬	1,239냥
	밭	719결	콩 198섬			
	합계	2,289결				

자료 : ① 《東萊府邑誌》, 순조 32년(1832)

② 《東萊府事例》, 고종 5년(1868)

2. 軍役稅

조선후기의 良役體制는 한편으로는 國家가 軍 · 職役에 사역하는 노동력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조달을 위해 軍布(良布 保布 身布라고도 불리었다)라는 身役稅를 획득하는 2중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 결과 조선후기에는 전기와는 달리 군역이 직역과 더불어 부세화되어 물납세의 부과대상이 되었다.

〈표 3〉의 役摠은 정부가 지배·수취하여야 할 동래부의 應役者の 숫자이다. 물론 여기서의 役摠은 군역뿐만 아니라 일반 職役까지 포함되어 있다. 즉 이 役摠은 직접적으로 사역되든가 또는 身役價를 납부하는 숫자이다.

이 役摠의 구성을 영조 16년(1740)의 《東萊府誌》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軍塚 6,112명, ② 將官 將校 1,289명, ③ 人吏官屬(하급 職役) 857명, ④ 燐燧臺 및 각站員役 248명, ⑤ 倭供各庫 庫子 및 各色匠人 142명, ⑥ 各司各處奴婢 791, ⑦ 기타 586명 합계 10,025명이다. 이 역총에는 군역과 일반 職役뿐만 아니라 노비역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동래부의 장정일 것이며, 이들은 東萊獨鎮과 좌수영 및 그 관하의 부산진, 다대진 등 府內水軍各鎮, 燐燧臺, 동래부 등 각급관아의 군역 직역 노비역에 충정되었다. 그런데 이 役摠 중 納布軍의 비중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이 역총은 여러 군데의 수입처 즉, 兵曹 5軍營, 地方官衙 및 군사기관으로서의 营鎮 등에 활당된다. 동래부의 경우 각 부문에 활당되는 役摠의 비중이 어떻겠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몇몇 사료를 통하여 대충 살펴볼 때 조선후기 동래부관아에 소속된 納布軍(군역자 또는 직역자)의 수는 약 1천명에 달할 것이며, 동래독진과 그 속읍에 소속된 신역자는 4,506명이며, 그 외 좌수영, 부산진 등에 활당되었을 것이며 그 나머지가 상납되었을 것이다. 고종 5년(1868)에 간행한 《東萊府事例》에 나타난 京役에 속하는 納布軍은 忠翊衛, 選武軍官, 倭獻進上領去軍, 4站撥軍과 5處 燐軍이 있는데 이 숫자는 모두 705명으로 거의 1,000명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京役納布軍의 비중이 적은 것은, 임진란 이후 방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水軍浦營을 부산지방(동래부관내)에 옮겼기 때문이다.

〈표 3〉 東萊府의 役摠과 役丁不足 狀況〉

年 度	戶口數	人口數	男丁數	應役實丁	役 摠	役丁不足
① 영조 16년	5,641戶	19,099명	9,616명		10,025명	
② 영조 24년	5,803戶		9,944명		6,510명	
③ 영조 35년	6,653戶	25,753명	12,287명			
④ 영조 50년			12,594명	6,881명	12,450명	5,569명
⑤ 정조 4년	6,981戶		15,178명	8,019명	12,081명	4,022명
⑥ 순조 31년	7,190戶	32,158명	15,558명			
⑦ 고종 5년	7,437戶	27,449명	14,956명			

- 자료 : ① 《東萊府誌》, 영조 16년(1740)
 ② 《良役實摠》, 영조 24년(1748)
 ③ 《東萊府邑誌》, 영조 35년(1759)
 ④ 《東萊府邑誌》, 순조 32년(1832)
 ⑤ 《正祖實錄》 권2, 즉위년 9월 경인, 동래부사 柳慤 의 상소
 ⑥ 《正祖實錄》 권10, 4년 8월 우신, 동래부사 李文源의 상소
 ⑦ 《東萊府事例》, 고종 5년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위의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가 수취하고자 하는 역총과 民人이 應役할 수 있는 실제의 人丁數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표 3〉의 ④ : 동래부사 柳慤의 상소와 ⑤ : 李文源의 상소를 종합해 볼 때 정조 초기에 있어 도래부의 원호는 약 7,000호이고, 役摠은 약 12,000명이며, 應役實丁은 7,000→8,000명으로 役丁不足이 4,000~5,500명인데 이른바 軍多民少를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약 7,000호 중에서 면역호가 약 40%정도 될 것이므로 應役戶는 4,200戶 정도이다. 그러므로 1호당 약 3명의 역을 지게되는 것이다.

양반은 면역되고 富實한 良人농민은 避役하므로, 군다민소한 상태하에서 無勢貧農層이 1家 3~4役의 疊役을 지게 되는 것이다. 정조 4년 8월, 동래부사 이문원이 상소에서 첨역을 지는 역정이 3분의 1을 넘고, 水軍이 육군을 兼役하고, 撥軍이 燐軍을 겸역하며 어린아이로써 充役하는 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노병자가 강제 충역되며, 6개월 동안에 도망자가 73명에 달한다고 한 것은 이 지방의 役弊의 일단을 말해 주는 것이다.

3. 還 販

還販은 春窮期에 빈농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보유곡(官穀)을 대여하고 추수기에 無利子로 회수하던 救恤制度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還販制度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戰亂이나 凶年에 대비한 묵은 곡식을 새곡식으로 바꾸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還販을 軍資販이나 國家保有販으로 운영하였으나, 흉년이나 질병 등에 의한 감축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의 한계로 인하여 還販 자체로써 元販을 충당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世宗 5년에 새와 쥐가 축낸 분량을 보충한다 하여 3升取耗法을 시행하여 元販을 회수할 때 원곡 1섬(15말)에 3되(피곡)의 耗販(利子販)을 부과 징수하였다.

그런데 이 제도는 명종조 이후 국가재정의 궁핍 때문에 이자곡의 일부나 전부를 중앙재정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는 즉, 出資販 所管官廳의 財用軍餉에 쓰여지는 會錄制度가 창설되면서 還販制度는 점차 부세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국가 및 지방의 재정이 만성적으로 파탄하게 됨에 따라 중앙 및 지방관청은 還販 대여를 통한 利殖을 주요 재정으로 삼게 되어서는 이제 還販제도는 賑貸제도가 아니라 부세제도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특히 還販制度는 지방장관의 고리대업이라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 삼정의 문란 중에 가장 극심한 것이 되었고, 민중을 항상

채무자로 전락시킨 것이었다.

조선후기 동래부의 환곡의 실태는 영조 16년(1740)의 《東萊府誌》에 의거해 살펴볼 수 있는데, 還穀을 會付穀과 會外穀으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다. 會付穀이란 다른 관아(이를테면 戶曹, 常平倉 등이다)에서 운영하는 환곡을 本官(여기서는 東萊府)에서 대행하는 것이다. 이때 本官은 해당 관아의 환곡에 대한 耗穀 중 일정 비율을 해당관아에 납부한다. 이와 같이 耗穀 중 일정 비율을 해당관아에 납부하는 것을 會錄이라고 하는데, 會錄比率은 관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會付穀 항목중의 元會穀은 戶曹穀으로 이것의 회록비율은 耗穀의 10분의 1이다. 즉 元會穀 중 쌀 53 섬에 대한 모곡은 5.3섬이고 이에 대한 1/10인 0.53섬(8말)이 會錄된다. 常平 · 賑恤廳의 會付穀은 15분의 12를 會錄하며, 耗穀의 전량을 회록하는 환곡도 있다. 이러한 회록제도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족한 중앙 재정을 보충하는 것이며, 또한 일정한 비율을 회록한 나머지의 모곡은 본관의 경비에 사용된다.

이에 대해 會外穀은 대개의 경우 본관에서 설치한 환곡이며, 따라서 모곡의 전량을 본관에서 사용하는 환곡이다.

동래부의 會付穀에는 元會穀, 常 · 賑廳穀, 統營穀 등이 있는데, 쌀 · 보리 · 벼 · 콩 등 各穀 합계가 9,873섬이고, 그 중에서 쌀이 67%로 가장 많고 다음이 벼가 14%이고 그 다음이 보리로 11%이며 그 밖에 콩 · 메밀 · 팥은 소량이다.

동래부의 會外穀에는 會內穀 補役庫穀 雇馬廳穀 등이 있는데, 各穀 합계가 8,238섬이고, 이 가운데 벼가 67%로 가장 많고 다음이 31%를 차지하는 쌀이며 콩 보리는 극히 소량이다.

이같은 會付 · 會外穀을 합한 還摠(환곡의 元穀總量)은 18,111섬이 된다. 이 동래부의 환곡은 元穀全量이 대출되는 盡分穀(원곡 중 절반을 대출하는

환곡을 半分穀이라 한다)일 것이므로 연간 취득하는 耗穀은 1,811섬에 달하게 된다. 이 중 동래부관아 자체의 비용으로 사용되는 양은 적어도 會外穀의 耗穀인 824섬과 會錄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元會穀의 38섬과 常賑廳穀의 39섬을 합한 901섬 이상은 될 것이다.

환곡운영이 농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부담을 주는지를 잠시 살펴보자. 당시 東萊府의 民戶가 약 5,600戶이므로 1호에 대출되는 환곡은 평균 3.2 섬이 된다. 그런데 당시 환경문란의 핵심인 환곡부담을 지지 않는 脫還戶의 숫자를 생각한다면 民戶 1戶당의 환곡은 3.2섬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3.2 섬의 환곡에 대한 耗穀이 4.8말인데, 이는 당시 零細小農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

4. 雜 稅

조선후기 국가의 民에 대한 기본적인 수취인 지세, 군포, 환모외에 海稅와 場稅 등의 잡세수입이 있었다. 이하에서 해세와 장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均役法 실시에 따른 良布半減에서 오는 군사관부를 비롯한 각급관아의 경비부족을 選武軍官布, 結米, 餘結 및 海稅收入으로 충당하였다. 이처럼 해세를 양포반감에 의한 수입부족 이에 따른 경비부족을 보전하는 紿代財源에 충당함에 있어 종래에 各宮房, 各營衙門, 各道 校院, 兩班勢家 등이 私占하고 있었던 各道 어장, 염분 및 船稅을 국가가 還收屬公하여 紿代財政을 전담하는 균역청에 소속시켜 수세토록 하였다.

海稅에는 漁稅, 鹽稅, 船稅, 行商稅 등이 있다. 《東萊府事例》(1868)의 기록에 나타난 당시의 해세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각종 선박에 부과하는 船稅에는 地土稅와 行商稅가 있는데, 부과방

식은 船種과 船隻의 길이를 표시하는 把數(1把는 10尺)를 기준하여 定稅하였다. 1868년 당시를 보면 杉船(海船) 180척에 대해 매척에 1냥씩 과세하며, 만약 行商을 하게 되면 每把에 2냥의 行商稅를 별도로 수세했다. 廣船(江船)에 대해서는 3파 이상을 小小廣船이라 하여 1냥, 4파에서 6파 까지는 小廣船이라 하여 2냥, 7파에서 9파까지는 中廣船이라 하여 3냥, 10파에서 15파까지는 大廣船이라 하여 5냥을 각각 수세하며, 4파 이상의 廣船이 행상을 하게 되면 元稅 이외에 다시 行商稅를 수세하였다. 洋中去處細綱船에는 每隻에 5냥을 수세하며, 漁商船이 행상을 하게 되면 매척에 2냥을 별도로 수세하였다.

② 동래부의 鹽盆은 69좌로서 이 중에 土盆 49좌를 290말 7흡, 童土盆 20좌를 38말 8되 3흡으로 각각 作定하고, 每斗地에 1냥씩을 과세하였다.

③ 漁稅는 漁條 158庫, 防簾 54庫에 대해서는 3등급으로 나누어 상등 10냥, 중등에 7냥, 하등에 4냥씩을 수세하였다.

이와 같이 수세하는 동래부의 연간 수세액은 해에 따라 증감하나, 균역청에 상납하는 元錢이 1,010냥 4분이고, 운반비가 84냥 3전 1푼, 京營 잡비가 100냥이며, 동래부에 교부하는 十一條가 120냥으로 모두 1,314냥 3전 5푼이다. 만약 수세액이 이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을 동래부 放役庫에서 보충해야 한다.

(2) 동래부가 수취하는 場稅에는 일반적 의미의 場市稅 외에 일본과의 교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왜관開市稅가 있다. 장세는 상업세로서 場市(鄉市)의 賣買商品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17세기의 대동법 시행후 농업, 수공업, 수산업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상품경제가 발달해 갔고, 이에 따라 지방의 여러 鄉邑에서 장시가 개설되었다. 대개 각 고을의 군현소재지나 교통의 요로에 매 5일마다 윤번으로 장시가 열렸는데, 《萬機要覽》에 따르면 19세기초에 전국의 장시는 1천개를 약간 넘었다.

19세기 전기에 東萊府 경내에 설치된 장시에는 邑內場(매월 2일과 7일에 開市), 左水營場(3일과 8일에 開市), 釜山場(4일과 9일에 開市)이 있었다.

동래부에서는 5일마다 열리는 각 장시에서 거래하는 상품에 과세하여 이를 지방비에 충당하였으나, 다른 고을과 같이 과세에 대한 정율이 없고 과세방법도 일정하지 않았다.

조선후기에 동래부관내에 있는 豆毛浦왜관과 초량왜관에서 朝日 양국 상인 사이에 私의으로 商品을 매매하던 定期市를 奈 관開市라 한다. 두모포왜관(고관소재)은 중종 39년(1544)에 설치되었으나(제1차두모포왜관) 그 후 임진란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선조 34년(1601)에 두모포에 다시 왜관이 개설되었다(제2차두모포왜관). 이 두모포왜관은 숙종 4년(1678)에 초량으로 이전하여 고종 13년(1876) 강화도조약 때까지 존속하였다. 왜관개시는 처음에 매월 3회(3, 13, 23일) 개시되었으나, 광해군 2년(1610) 부터 월 6회(3甸의 3, 8日)에 개시되었다.

밀무역(潛商)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開市日에는 조선상인에 대해 동래부사가 奈 관출입허가증으로서 〈問鑑〉(驗牌라고도 부름)을 급부하여 開市大廳에서 상품을 매매하도록 하였다.

그 후 출입상인을 제한하여 〈指定特許商人〉(商賈라 함)을 30명으로 한정하고, 京外의 富實人 30명에게 호조에서 〈帖文〉(許可證)을 발급하여 이들만이 開市大廳에서 교역토록 하였는데, 이 〈指定特許商人〉의 숫자도 차츰 줄어 20명, 15명, 5명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이 開市大廳에 訓導·別差가 교역현장에 임하여 소정의 세를 징수하였다. 이 개시세 중 250냥(銀)을 매년 부산진에 획급하여 入送使(倭使)에 대한 5節日回禮費에 사용토록 하였는데, 차츰 수세액이 감소되어 영조 36년(1760)에 개시세를 동래부에 이급하여 鋪陳雜物費에 쓰게 하였는데, 액수는 전화 537냥 7푼이었다.

이상 제1절에서 동래부관할하의 토지와 人身을 대상으로 한 제반 수취에 대해 살펴보았다. 東萊府收取의 稅役別 收入量과 그 用度를 〈표 4〉에 정리해두었다.

〈표 4〉 東萊府收取의 稅役別 收入量과 그 用度

稅役分類	稅 目	收 入 量	용 도	자료년도
地 稅	田 稅	쌀 548섬 콩 197섬	상납분(왜관경비)	1831(순조 31년)
		쌀 506섬 콩 198섬	상납분(왜관경비)	1867(고종 4년)
	三 手 米	쌀 217섬	상납분(왜관경비)	1831(순조 31년)
	大 同 米	쌀 1,767섬	동래부세입 左水營需米條 상납분(왜관경비)	1867(고종 4년)
		쌀 310섬		
		쌀 400섬		
		쌀 700섬		
	結 米(結錢)	1,214냥	左水營需米條	1867(고종 4년)
	土 地 附 課	매결 40말(?)	慶尚監營 등	
	課 外 雜 稅			
軍 役 稅				
還 耗	會 付 穀	987.3섬	회록미는 상납	1739(영조 15년)
	會 外 穀	823.8섬	동래부세입	1739(영조 15년)
기타 雜稅	海 稅	1,094냥	군역청상납	1867(고종 4년)
		84냥	(운반비)	
		120냥	동래부세입	
	場 稅	?	동래부세입	
	⑦ 場市稅	537냥		1760(영조 36년)
	⑧ 怪관開市稅			

III. 東萊府의 京司上納과 營納

各道의 郡縣이 수취한 제반 賦稅 중 일부는 중앙관서 및 地方營鎮에 상납되고 나머지가 지방재정으로 사용되어진다. 본장에서는 동래부가 수취한 부세 중 상납사정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조선후기 各道 郡縣은 郡民으로부터 수취한 地稅·身役稅·屯田稅·海稅 등 각종 稅貢을 戶曹를 비롯한 중앙관부에 상납하고 일부는 監營·水營·兵營 및 鎮管의 巨鎮과 諸鎮에 바쳤다. 부연하면 각 주현의 전세와 삼수미는 호조에, 대동상납미는 宣惠廳, 海稅와 結米는 均役廳에 각각 상납하였고, 그 밖에 병조와 5軍營의 각 군문에는 주로 군역자로부터 징세하는 신역세(군포·인두세)를 상납하며, 또한 여러 경아문에도 직역자로부터 징세하는 신역세를 상납하였다. 그리고 屯田을 가진 경아문에는 징세한 둔세를 상납하며, 내수사와 각궁방에 대해서는 奴婢貢과 전세(無土宮房田)를 수세 상납하였다. 이 밖에 감·병·수영 및 진관의 각진에는 대동세(유치미)와 신역세 및 기타 세공을 바쳤다.

동래부에는 효종 6년(1655)에 獨鎮으로 승격한 東萊鎮과 선조 25년(1592)에 울산에서 옮겨온 南村(남구 수영동)의 左水營과 좌수영 관하의 釜山浦鎮管(僉使營)과 부산포진관 산하의 多大鎮·豆毛鎮·開雲鎮·包伊鎮·甘浦鎮·丑山鎮 漆浦鎮 등 10개의 萬戶堂이 있었다.

조선후기 東萊府의 京·營上納狀況은 정조 18년에 편찬된 《賦役實攬》에 의거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표 5〉가 그것이다. 표에 게재된 동래부의 京 营上納은 동래부에서 호조 균역청 등 중앙관서에 상납하는 稅貢과 監營·좌수영·부산진 등 地方營鎮에 바치는 稅貢이다.

〈표 5〉 東萊府의 京 營上納狀況 - 正祖 17년(1793)

구분	내 역	上納額
京	戶曹寺奴貢錢 및 同役價 태가 잡비	37냥 2전
司	戶曹巫稅錢 및 同役價 태가 잡비	13냥 9전
上	均役廳海稅錢 및 태가 잡비	71냥 1전
納	忠翊廳 忠翊衛錢 및 잡비	25냥
營	監營年分紙	33속 10장
	左兵營箭竹	16,330개
	同 陳皮	12근
	同 憊毛	2봉
	左水營 需米	400섬
	同 箭竹	9,300개
	同 水軍木	39동 10필
	同 射夫木	11동 7필
	營納 雜費錢	378냥 7전
納	釜山減市代選武木	15필

자료 : 金玉根, 《釜山經濟史》, p.179.

《賦役實摠》 慶尚道(正祖 18年)

일반적으로 지방관아에서 중앙관아에 상납하는 세목에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표 5〉 참조) 地稅 중의 전세, 삼수미, 대동상납미, 결미와 신역세, 회록미 및 기타 잡세가 있다. 그런데 동래부의 京司상납은 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동래부에 소속된 奴者의 호조상납 奴貢, ② 호조에 상납하는 무당의 무세, ③ 군역청 상납 해세와 ④ 충익위에 상납하는 특수 군역자인 충익위 50명에 부과한 군전(신역세) 55냥이 있다. 그런데 호조에

상납하는 전세와 선혜청에 상납하는 대동세가 없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동래부를 비롯한 경상도 동남부 각 군의 田稅와 대동세는 京司에 상납하지 않고 왜관소재지인 동래부에 바쳐 倭供에 충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곡이 耗穀으로 상납하는 會錄米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동래부의 회록미는 모두 동래부관내의 營鎮의 還耗인 것으로 보인다.

동래부가 상납하는 營納에는 ① 경상감영에 상납하는 年分狀啓用紙 (이것은 과외잡세이다), ② 경상도 좌병영에 箭竹, 陳皮, 염소가죽의 상납 (모두 과외잡세), ③ 경상도 좌수영에 상납하는 수미(대동유치미) 수군목 (신역세) 재부목(신역세) 箭竹,⁴⁾ ④ 선무군관으로부터 수세한 군관포로서의 釜山減布代選武木이 있다.

이상에서 동래부의 중앙상납 및 영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동래부의 총조세수입에서 이 부분을 뺀 것이 동래부 및 동래부내의 諸鎮의 경비에 충당되었다.

IV. 東萊府의 歲出入

조선조의 지방재정의 수입을 종목별로 분류하면 ① 土地收入, ② 貢物 (戶役), ③ 身役, ④ 還穀利子 및 ④ 雜稅 등으로 나누어진다.

①의 토지수입에는 官屯田과 같은 直營地收入(조선후기 官屯田의 경

4) 營納 가운데 監營年分紙와 慶尚 左兵營과 左水營의 箭竹·陳皮·염소가죽은 모두 과외잡세에 속하는 것인데, 대동법을 실시할 때 각 군현에서 3영(감·병·수영)에 상납하는 모든 영납을 없애고, 대동미에서 지급하는 營需米로써 경비에 쓰도록 하였으나 대동법 실시후 얼마 안가서 각종 영납이 재현하여 농민의 부담이 토지에 대한 과외잡세로서 가중되었다.

영방식이 小作制로 전환함에 따라 坛稅라고 일컫는 小作料로 변화함)과 衙綠 公須田과 같은 民田에 대한 地稅收入이 있다.

②의 貢物에 있어서 지방관부의 수입이 되는 부분은 地方貢物 또는 鄉貢이라고 부르는 營邑의 需用을 위한 稚·鷄·柴·炭·氷 등으로 구성되는 本色(現物)貢物이다. 이 지방공물은 本色貢納制를 철폐한 후기의 재정개혁(大同法의 실시)에서도 제외되어 甲午改革에 이르기까지 존속하였다.

③의 役에는 요역(부역)과 身役이 있는데, 지방관부에 제공하는 요역도 중앙관부에 대한 요역과 더불어 大同稅에 흡수되어 地稅化되었고, 지방 관부에 배정된 軍役과 職役의 신역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 의무적 立役制 대신에 物納制(布錢 穀納)로 변천해 갔다. 이 결과 17세기 이후 身役(身布 穀錢) 수입이 지방재정의 세입구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④의 환곡이자는 지방관부에서 설치한 환곡의 이자수입과 京司穀의 이자(耗穀)의 일부를 이금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수입이 있다.

⑤의 지방관부가 획득하는 雜稅에는 場市稅, 巫稅, 匠稅, 店稅, 海稅什一條 寺稅 등이 있다.

조선후기에는 중앙재정과 더불어 지방재정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7세기에 大同法을 중심으로 하는 財政改革으로 지방재정이 大同稅(留置米)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軍役·職役의 身貢수입과 還耗수입이 지방비의 새로운 財源으로 등장하였고 또한 재정위기가 末期的症狀을 띠고 확대 심화된 18세기 이후에는 科外雜稅의 수탈이 증대되어 갔다.

동래부의 歲入內譯을 정조 18년의 《賦役實攤》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丑 6〉 東萊府의 歲入構造 - 正祖 17년 (1793)

歲入種目	歲入內譯	
① 토지수입	(1) 需米 280섬	311섬(10%)
	(2) 使客支供米 15섬	
	(3) 衙綠公須米 15섬 8말 5되	
	(4) 屯稅租(벼) 78섬 1말 4되	41섬(1%)
	(5) 屯稅太 5섬 11말 9되	
	(6) 屯稅木(목면) 1필	
	(7) 接賓雜物價米 50섬	65섬(2%)
	(8) 狀啓紙價米 15섬	(科外雜稅)
② 地方貢物		
③ 身役稅	(9) 錢 1,902兩 3錢	380섬(12%)
④ 還穀利子	(10) 還耗米 79섬 2말	281섬(9%)
	(11) 還耗禾 353섬	
	(12) 還耗太 44섬 11말	
	(13) 還耗보리 6섬 8말	
⑤ 雜稅	(14) 開市稅錢 537兩 6錢	107섬(5%)
	(15) 海稅錢代一條 135兩 8錢	25섬
	(16) 巫稅錢 38量 4錢	8섬
⑥ 기타	(17) 公木三錢條 4,500兩	900섬(61%)
	(18) 政府(戶曹)교부 5,000兩	1,000섬
합계		3,118섬(100%)

자료：金玉根, 《釜山經濟史》, p.183.

《賦役實摺》慶尚道(正祖 18年)

지방세입 중 토지수입은 官屯田과 같은 直營地耕作收入과 民田에 대한
지세수입으로 대별할 수 있다.

《經國大典》에 따르면 관둔전은 官奴婢 또는 人吏(鄉吏)의 노동으로
경작하고 民丁의 徵發 使役을 금하고 있으나, 실지에 있어서 民丁使役의
폐해가 근절되지는 않았다. 조선전기에 지방공공기관의 직영지였던 관둔
전이 임란 후에는 경영방식을 소작제로 바꾸어 民田의 소작관행에 따라
수확량의 약 1/2에 달하는 소작료(屯稅)를 취득하였다. 동래부의 관둔전
에서의 수입은 (4)屯稅租, (5)屯稅太, (6)屯稅木으로 나타나 있다.

군현에 분급된 토지로는 위의 관둔전 이외에 衙綠田 公須田이 있는데,
관둔전은 직영지(《경국대전》규정에 의하면 自耕無稅)인데 반해 衙綠·
公須田은 收租權만 지방관아에 이양된 토지로 民田이다(各者收稅地). 조
선초기에는 衙綠田은 外官의 祿俸財源을 조달하기 위하여 분급된 토지이며,
공수전은 使客支待費와 공공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이다.
대동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목이 토지에 부과된 후기에는 衙綠·公須田을
免稅出賦地로 하여 조선전기의 田稅만 면제하고 다른 세목은 국가에 바
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衙綠·公須田을 免稅出賦地로 한 이유는 大同
法하에 外官祿俸과 使客支待費를 비롯한 지방비의 대부분을 大同留置米로
지급해 주었기 때문이다. 동래부의 衙綠公須田의 규모에 대해서는 명
확하지 않다.

위의 관둔전을 제외한 모든 民田에 부과하는 結稅는 國稅에 속하는
것으로서 전세·대동·삼수미·결작의 본세와 그 부가세 및 잡비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세 이외에 지방비 조달을 목적으로 토지에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잡세가 있다. 이 지방잡세에는 대동세에 흡수되지 않고 正稅
(정규세)로 남겨둔 地方貢物로서의 雉鷄柴炭과 그 밖의 규정외 잡세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 시기에 모든 군현에서

지방비를 捏出하기 위하여 거액의 잡세를 토지에 부과하고 있었으며 19세기 이후 開港期에 가까워질수록 증대되어 갔다. 지방잡세가 이렇게 급격히 증대하게 된 이유는 정치기강의 문란과 재정궁핍이 심해졌기 때문이었다.

정조 18년의 《賦役實攷》에 따르면 당시에 한 군현에서 징세한 지방잡세가 수백석에 달하며, 또한 전국에서 징세하는 규외잡세의 총세목이 수십-수백 가지 종목에 이르고 있다. 지방공물은 대동법 이전에는 戶役으로서 家戶에 부과하였으나, 대동법 하에서는 군현에 따라 부과 방법을 달리하여 혹은 家戶에 혹은 토지에 부과하였으며, 그 稅物도 통일되지 않고 군현에 따라 생산물 혹은 화폐 혹은 곡물로 정수하였다. 지방잡세 가운데 地方貢物 이외의 것은 모두 稅法規程에 없는 군현에서 설정한 비정규세이다. 특히 18세기 말 이후 정치기강의 급속한 문란과정에서 守令에 의한 橫領과 아전들의 作奸이 더욱 극성해짐에 따라 고을마다 규외잡세가 증대하여 갔다.

이러한 지방잡세의 용도도 다양한데 대충 분류해 보면 특정공무담당자에 대한 보수, 관리의 공무출장을 위한 旅費, 관용의 연료비, 식료품비, 기타 잡비이다. 〈표 4〉의 (7)接賓雜物價米 50섬과 (8)狀啓紙價米 15섬은 동래부가 民田에서 과징한 雜稅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재정의 주요수입인 대동세에 대하여 살펴보자. 17세기 재정개혁 이후의 결세 가운데 지방재원에 충당되는 稅目의 하나가 대동세이다. 임진란 이후 현물공납제를 철폐하는 세제개혁에 의하여 설정된 대동세는 기본적으로 國稅의 성격을 띤 것이나 그 일부를 군현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관부에 교부하였다. 부연하면 대동미(대동세)를 상납미와 유치미로 구분하여, 상납미는 중앙 各司의 공물구매비로서 선혜청(호조 또는 상평청)에 바치게 하고, 유치미는 지방비의 지출, 대동미의 수송비, 外貢의 조달에 사용하도록 군읍에 획급하였다. 유치미의 예산은 도단위로 대동법을 실시할

때 지방사정에 따라 마련한 大同事目에 의거하여 편성하였으므로 그 절 대액이나 비율 또는 용도가 일정하지 않고 지방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치미는 그 전액이 지방재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는 지방비 이외에 대동미의 수송상납비(漕運費) 및 대동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본색현물로 상납하는 外貢으로서 남게 된 일부의 進上物資와 土產貢物의 조달상납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유치미 가운데 이들 상납관계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지방관부의 재원에 충당되는 부분이다.

各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유치미의 용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충 정리해 보면 ① 官需米, ② 公事紙物費, ③ 使客支供費, ④ 衙綠米, ⑤ 刷馬費, ⑥ 各官 月課軍器費, ⑦ 祭祀費, ⑧ 官船改造 修理費 등 그 범위가 넓다. 이처럼 지방비를 대동세에서 할애해 준 목적은 지방관에 의한 과외잡세의 수탈을 방지하려는 데 있었다. 이 결과 대동법 초기에는 한 동안 과외잡세가 거의 폐지되었으나 조선사회의 체제적 위기와 함께 재정위기가 확대심화되는 과정에서 과외잡세가 재현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증대해 갔다.

官需米, 衙綠米, 使客支供費, 公事紙物費는 평안, 함경도를 제외한 6도 각官의 유치미에 공통적으로 計給되고 있는 費目이다. 各官 官需米는 官用의 식량, 각종 需用品의 구입과 대동법 아래 존소한 일부 外貢進上에 쓰이는 것이다.

衙綠米는 조선전기에는 民田 收租地 가운데 各官에 40-90結의 衙綠田을 분급하여 그 결세(전세) 수입으로 수령의 녹봉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대동법 실시 후에는 수령의 녹봉인 아록미의 대부분을 대동미에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대동미에서 각官 아록미를 支辨하는 이유는 임란 후 1결에 4-6두로 인하된 田稅수입만으로써는 녹봉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그 전액을 대동세에서 획급해 줌으로써 지방재정의 궁핍을 완화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같은 이유로 아록미를 대동세에서 획급해 주는 대신 아록전에 대한 대동세를 국가(선혜청)에서 수세하고 감하된 田稅만을 종전과 같이 군읍에서 수세하여 지방비에 사용토록 하였다. 그런데 18세기말에 편찬된 《賦役實摠》에 수록된 전국 3백여 군현의 郡邑別收稅實積 가운데 아록전의 전세수입이 없는 군현이 상당히 많다. 이는 대동법 실시 후 왕조말기에 재정난이 그 심각도를 더해감에 따라 아록전이 규정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使客支供米란 지방순찰을 하는 監司나 중앙에서 파견하는 官吏 등 공무여행자를 위한 숙식비(支待費)에 사용하는 재원을 말하는 것이다.

동래부의 유치미에서 지급받은 것으로는 〈표 6〉의 (1)需米 280섬과 (2)使客支供米 15섬과 (3)衙綠公須米 15섬 8말 5되로 그 총액은 311섬 4말 3되이다.

〈표 6〉의 (9)錢 1,902兩 3錢(쌀 380섬 7섬)은 동래부에 소속된 각종 納布軍(身役者)으로부터 수세한 신역세이다. 동래부도 조선후기 다른 고을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納布軍(各色保率)을 보유하고 그들로부터 1인당 배 1필(1111전 2냥) 또는 그 이하의 신역세를 거두어 官用에 쓰고 일부는 수령과 아전들이 착복하였다. 각 군현의 납포자의 役名과 그 수는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으나, 대체로 후기로 갈수록 役名이 더욱 다양해지는 동시에 납포군의 수가 증가해 갔다. 조선조 말엽에 있어서 동래부의 各色納布軍이 약 1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표의 ① 還穀利子(쌀·벼·콩·보리)는 동래부에서 설치한 환곡의 대출에 의한 耗穀이며, 還耗各穀의 쌀환산액이 281섬 6섬이다.

開布稅錢 537냥 6전(쌀 107섬 8말)은 왜관개포에서 징세한 조세이고, 海稅錢什一條 135냥 8전(쌀 25섬 3말)은 동래부에서 징세하여 均役廳에 상납하는 海稅 중 1/10을 동래부에 교부하는 것이다.

임진란 이후 倭使가 가져오는 公貿易品과 진상물에 대한 대가를 조선 정부에서 무명(綿布)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를 公木 또는 公作木이라 불렀다. 이 공목을 경상도 각 고을의 전세로써 조달했는데, (17)의 公木三錢條 4,500兩 (=쌀 900섬)은 公木 중 일부를 倭使접대 등 왜관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행한 동래부에 교부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 정조 18년의 《賦役實摠》에 의하면 동래부가 위의 제반수입과는 별도의 재원으로 62종목에 달하는 수용품을 買用(구매사용)한 것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11戶曹)의 稅蔴수입 5,000냥을 동래부에 교부한 것이다. 정부가 동래부에 5,000냥을 교부한 이유는 동래부가 倭使접대를 비롯한 倭供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동래부의 세입규모를 합산해 보면 쌀로 약 3,118섬이 된다. 동래부는 이 세입규모를 가지고 동래부의 여러 경비에 충당했던 것이다. 동래부의 세입에서 특수한 것은 중앙정부의 교부가 61%나 된다는 것이다. 왜관경비에 이외의 동래부 세입의 대부분은 지세, 신역세, 환모가 그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지방재정의 支出構造를 費目別로 분류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인건비(지방관의 봉록, 군병의 월료 기타 노무비) (2) 官衙修築費
 (3) 物件費(紙筆墨 등의 사무용품, 官用米 · 鹽 · 醬 · 油 · 清 · 蜜 · 雉 · 鶴 · 柴 · 藥材 기타 잡물조달비) (4) 祭祀費(鄉校春秋祭享, 山川祭, 기타 지방관에서 거행하는 제사) (5) 운수교통비(刷馬費 등) (6) 관선건조 · 수리비 (7) 군사비(군기 · 병선 · 군량 등) (8) 의료비 (9) 교육비 (10) 進上物의 조달상납비 (11) 기타 잡비.

그러면 〈표 6〉의 세입을 가지고 이 시기 동래부에서 지출한 경비의 용도를 費目별로 대충 분류하면, 인건비, 물건비(이를테면 문구류, 清密 약재 · 과실 · 해산물 · 稚鷄 · 正鐵 · 馬鐵 기타), 제사비, 雇馬費, 外貢進上

費, 기타 府衙의 운영, 倭人접대 및 官用연료비 등이다. 세목별 지출양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V.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18세기 부산지방의 조세수취는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지세, 신역세, 환모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총조세수취량 중 상납분에 대해서는 왜관경비로 동래부에 남겨졌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동래부의 총세입규모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비가 61%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倭使접대를 비롯한 倭供을 담당했기 때문이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비 이외의 동래부의 주된 세입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국가의 재정과 지방재정은 전반적으로 궁핍하였는데, 이러한 상황하에서 농민은 가혹한 수탈을 당하였다. 동래부의 농민도, 비록 대동상납에 따른 科外雜稅는 없었지만, 토지에 있어서의 科外雜稅, 軍役價의 疊徵 및 환곡의 부담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음을 또한 알 수 있다.